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3254
----------	-------

제안연월일 : 2025. 0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626호)	임이자	2024.12.18.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079호)	김위상	2024.12.30.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731호)	임이자	2025. 4.11.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824호)	박홍배	2025. 4.15.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17.)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9.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기관의 책임 강화, 전문성 확보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단 기능 재배치와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둘째,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관리 권한 및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국립공원 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구조·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u>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u> <u>함한 14명 이내의 이사</u> 와 감사 1명을 둔다. <u><신 설></u>	제5조(임원) ① ----- -- <u>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u> <u>이내의 이사</u> -----. ② <u>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u> <u>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u> <u>으로 한다.</u>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9조(사업)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u> <u>비·대응·복구 및 지원</u> 6. <u>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u> <u>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u> <u>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u> <u>성·운영</u> 7. ~ 16. (현행 제5호부터 제1 4호까지와 같음)
5. ~ 14. (생 략)	